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

1 평가개요

□ 평가방향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담보 및 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기관별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 사회적 가치, 국민참여, 협업과제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정부혁신 준비, 실행, 성과 등 단계별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전파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21개 사업 이외에도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한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자율혁신 유도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 18부 4처 16청 5위원회

□ 평가시기 및 방법

- '18년도(1~12월) 실적 대상으로 '18.12월 ~ '19.1월 평가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단」 구성·운영 및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활용
 - * 여성 의사결정 권한·성평등 기여도(여가부), 인권개선(인권위), 중증장애인·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복지부, 중기부), 협업·조정·갈등관리(국조실), 신뢰도(외부전문기관), 청렴도(권익위) 등 과제 주관부처가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
- 기관별 최종 득점을 환산하여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10점), 정부혁신평가 우수등급 발표 및 포상

2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 준비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 실행계획의 충실성 - 적정성, 실현 가능성	9	15
		• 혁신 추진 기반 - 혁신 추진 체계, 혁신 운영 지원	6	
혁신 실행 및 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11	29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 핵심 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18	
	참여와 협력	•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상향식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사례 - 국민참여 제도 활용도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13	29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 정보공개	6	
		• 협업·조정·갈등관리 - 협업 및 조정 - 갈등관리	10	
	낯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정부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신뢰도 및 청렴도 - 성평등 기여도 -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실적	6	17
		•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 데이터 기반 혁신·창의행정 - 현장행정 활성화 실적 - 일하는 방식 혁신	11	
대표 사례		• 기관 대표 혁신 사례 -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자율평가 - 자율 혁신 사례	10	10
총 점			100	

□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 준비, 실행 및 성과 단계별 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추진실적 및 대표 사례에 대해 기관 자율평가, 국민 체감도 측정

3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실행계획의 충실성 (9점)

- 기관이 수립한 실행계획의 적정성, 수립된 전략 및 실행과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정부혁신평가단이 평가 (6점, 정량·정성)

연 번	구 분	내 용
1	적정성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등이 기관의 실행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기관 추진 실행과제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
2	실현 가능성	조직, 인력, 기능, 예산, 연도별 추진계획 등 실행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기관이 자율평가 (3점, 정량·정성)

* 구체적 자율평가 방식은 추후 공지

※ 평가 방식

1. 기관별 실행계획 평가(상기 평가기준으로 평가단이 평가, 6월)
2. 미진한 부분, 컨설팅 및 보완 권고(평가단 → 각 기관)
 - * 종합 추진계획을 충실히 담지 못한 기관에 대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 계획 실행 시 반영 → 실행계획 완성도 제고
 - * 정부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이행 상황 및 실적 점검
 - * 실질적인 정부혁신 성과 창출 유도에 의의
3. 기관별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율평가(연말)
 - * 「계획수립 → 정책 추진 및 문제해결 → 실적 평가」 전 과정을 기관이 추진 / 기관 스스로 목표 및 지표 설정, 평가기준 수립, 평가위원 자율 구성, 점수 부여
 - * 전문가 평가(1번) 결과와 비교를 통해 기관 스스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완 →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평가근거/
자료

- 2018년 4월 제출한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혁신 추진 체계 (3점, 정량·정성)

- 혁신을 추진하는 전 과정(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서 국민, 내부 공무원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였는지에 대해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상향식 의견수렴 실시 여부	혁신 추진 과정에서 상향식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상향식 의견수렴 예시 : 해커톤, 공모, 타운미팅, 현장토론회, 경진대회, 제안제도 등 ※ 최소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인정
2	상향식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실적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내용을 평가

나. 혁신 운영 지원 (3점, 정량·정성)

- (1) 혁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유형이 다양한지 평가

- * 유형의 다양성에 초점, '18년도 실제 실행한 지원만 인정
- * (예시)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 가점, 기관장 표창, 포상, 연수 등
- * 1개 유형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 지원 건수(유형별 차등) : 추후 공지

- (2) 개인·부서 성과와의 연계 여부,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성과와의 연계	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 (예시) 부서(부내)평가, 성과급, 근무성적평정
2	기관장 관심도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재 자체 행사실적 ※ (예시) 포럼, 공유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등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균형인사 (6점, 정량)

(1)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3점)

연 번	내 용
1	여성고위공무원단 목표달성률
2	4급 이상 여성 본부과장급 목표달성률
3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목표달성률
4	중앙행정기관 주요 보직의 여성 임용비율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소관 / 【참고자료 1】 참조

(2)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3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고용률·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 산하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 평가

* (기존) 중앙행정기관 대상 → (확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근로자 (비공무원),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상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소관 / 【참고자료 2】 참조

나. 인권개선 (5점, 정량·정성)

- 인권개선 이행노력 및 성과를 종합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권고이행	권고이행계획 회신(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권고이행의 충실도, 권고이행의 난이도
2	인권개선 노력	평가대상 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권고를 전혀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인권개선 노력’ 비중을 100%로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3】 참조

다. 물품 구매 (가감점, 정량)

-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 여부 평가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4】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3건을 평가 (정성)

※ 사례 작성 시 고려사항

- ① (정책 우선순위 조정) 기관의 핵심 정책, 중점 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 시 사회통합·복지·안전·상생협력·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
- ② (조직 운영) 조직 기능 재배분,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조직 운영
- ③ (제도 개선) 법령, 제도 등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는지 여부 또는 개선 노력 과정
- ④ (정책 효과) 정책 목표 제시 여부 및 개선·보완한 정책이 정책대상자 (국민, 지역 주민 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정도(일자리 창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 사회적 가치 내용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3P 참고
- * 균형인사, 인권개선, 구매 관련 내용 및 국정과제 제외(중복 불가)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5.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13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상향식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 사례 (5점, 정성)

- 기관이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의견 수렴 및 소통 과정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시,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소통을 추진하였는지 과정에 대해 평가
2	참신성, 창의성	기존 방식과의 차별화 정도
3	추진 성과	개발한 정책, 개선한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
4	국민 체감도	실제로 정책, 서비스를 접한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 (예시) 국민참여예산제, 국민숙의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가실행 계획 참여, 국민외교센터, 국민청원검사제, 국민참여형 도시재생 등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5P 참고)
-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지표4)’에 제출한 사례, 국정 과제와 중복 불가

나. 국민참여 제도 활용도 (5점, 정량·정성)

- 제도화된 국민참여 수단을 기관이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국민디자인단	국민과 함께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 정책 추진 성과 및 기반 조성 노력
2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열린소통포럼 행사 참여 또는 기관별 자체 행사 개최 실적
3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기관이 국민제안 심사 후 채택한 안건의 정책 반영 또는 실시 정도
4	국민생각함 활용도	국민생각함의 ‘기관안건’ 등재 건수 및 호응도

- * 행정안전부(국민참여정책과)·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과) 소관 / 【참고자료 5】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가지표

5.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13점)

다.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3점, 정성)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의 활용 정도 및 활용을 통한 정책 성과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활성화 노력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에 대한 직원 대상 교육·홍보, 중점작성대상 정책 지정·운영, 활용현황 점검 등 활성화 노력
2	활용 실적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필수작성대상(장차관급 이상 회의체 안건)에 대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작성비율

<점수 부여 기준(활성화 노력)>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소관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추진계획 공문 시행 및 매뉴얼 배포·교육 실시 예정(6월)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감점, 정량)

- 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유휴 시간에 국민에게 개방·공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 개방 대상 공공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1점) / 정부24의 등록정보를 통해 판단(상시 등록 가능)
 - *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소관 / 【참고자료 6】 참조

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4점, 정량·정성)

- 인프라, 개방, 활용·지원 및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전반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인프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 담당인력 지정, 교육훈련,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집행, 보유 데이터 목록 관리,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및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2	개방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개방데이터 수요 발굴 노력,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율,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3	활용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수요자 신고 신청 적기처리율, 홍보 실적
4	품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5	기타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우수사례,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수행 또는 계획수립,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권고 및 조치 수행

-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7】 참조

다. 정보공개 (2점, 정량·정성)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및 충실성을 평가
 - *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를 반영
 -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8】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7. 협업·조정·갈등관리 (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협업 및 조정 (5점, 정량·정성)

○ 협업 및 조정 핵심사항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부처 내 역량강화/ 칸막이 제거 노력	- 차관(급) 주재 정책점검회의 운영 실적 - 실·국간 횡적 정책현안 TF 운영 실적 - 부처 내 공직자 개인역량·판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부처 간 협업·조정 노력	- 협업조정과제 점검·관리 노력 ※ 명백한 정책혼선 사례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 - 유관부처와의 정책협의 추진 실적
3	협업 우수사례 및 협업문화 조성	- 도시재생 등 주요 국가시책의 부서 간·기관 간 협업 또는 민관 협업을 주관하거나 조력한 사례 - 기관 간 소통·협업을 위한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

* 1, 2 : 국무조정실(정책조정과) 소관 / 【참고자료 9】 참조

* 3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소관 / 【참고자료 9】 참조

나. 갈등관리 (5점, 정량·정성)

○ 집중관리 갈등과제 24개 및 부처관리 갈등과제 31개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갈등관리 제도운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활용 정도 - 갈등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
2	갈등과제 관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관계장차관회의 등 국정협의체 활용 노력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현장 방문 등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노력
3	갈등관리 성과	갈등과제별 실질적인 해소·완화 정도

* 국무조정실(정책조정과) 소관 / 【참고자료 9】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신뢰도 및 청렴도 (3점, 정성)

(1) 부처별 신뢰도 (가감점)

구 분	대 상	점 수
신뢰 기관	상위 5개 기관	최대 +0.5점
비 신뢰 기관	하위 5개 기관	최대 -0.5점

* 전문기관 조사 의뢰

(2) 부처별 청렴도 (3점)

연 번	구 분	내 용
1	외부청렴도	부패위험지수, 부패지수
2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3	정책고객평가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4	부패사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훈계 등 처분에 대한 감점

* 측정항목 변경 가능,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반영 검토 중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 소관 / 【참고자료 10】 참조

나. 성평등 기여도 (3점, 정량·정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실적,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책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실적(기관장 참석여부, 고위직 및 직원 예방교육 참여율,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 실시 여부)
2	성주류화 정책 노력도	성주류화 정책 추진 실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개선실적, 특정성별영향평가 수용률)

* 여성가족부(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성별영향평가과) 소관 / 【참고자료 1】 참조

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실적 (감점, 정량)

○ 중앙행정기관 산하 관리대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관리 실적(채용제도 개선·관리 노력, 채용비리 적발 노력)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소관 / 【참고자료 11】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데이터 기반 혁신·창의행정 (4점, 정량·정성)

(1) 정부24에 분야별·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 서비스의 기초자료인 9만여 종의 공공서비스 목록에 대한 현행화 실적을 평가 (1점)

연 번	구 분	내 용
1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등록 서비스 명칭, 자격 요건, 지원 내역 등 변경 사항을 월 1회(매월 말일) 정비(현행화)
2	기타(감점)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중이나 목록 등록 누락, 담당자 교육(상·하반기 각 1회) 불참 기관 등

* 행정안전부(정부24운영팀) 소관 / 【참고자료 12】 참조

(2)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선한 사례를 평가 (3점)

연 번	구 분	내 용
1	첨단기술 활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등 기술의 적정성, 개방성, 이용 용이성
2	참신성, 창의성	서비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3	개선 효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예시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를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일반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완성

* (예시 2) 움직임·화재 센서, 가스·수도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등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나. 현장행정 활성화 실적 (3점, 정성)

- ‘현장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의 충실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우수 사례를 평가

연 번	구 분	내 용
1	계획수립 및 운영의 충실성	■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운영절차 및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여부 ■ 정기적 현장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현장의 문제점 해결 등 기관별 활성화 계획의 적극성 및 사후관리 등 운영의 충실성
2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우수 사례	■ 현장의 애로사항 및 필요를 서비스 설계·제공과정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 ■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용방법의 창의성 및 기관의 추진의지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 조직기능에 따른 현장행정 추진의 적합성 정도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 *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소관 / 별도 안내 예정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다. 일하는 방식 혁신 (4점, 정성)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 참조 :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지침 >

- ▶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확산(모바일 전자결재, GVPN, 영상회의, G드라이브 활용 실적 등)
 - * G드라이브 미구축 기관 등 중점과제 추진이 어려운 경우 기관 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가능
- ▶ 행·재정 낭비 축소(불필요한 일 버리기 발굴·실천, 낡은 관행 제거, 업무매뉴얼 공유·지식 등록 확대 등)
- ▶ 선례답습 행정 탈피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사례

연 번	구 분	내 용
1	혁신성	기존과는 다른 독창적·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했는지 여부
2	노력도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기관 전체적인 준비(자체 홍보, 교육 등 적극적인 변화관리 노력) 및 자원 투입 여부
3	효과성	조직의 일하는 방식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는지 여부
4	확산 가능성	타 부서 및 타 기관 등으로 확산 가능 여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소관 / 별도 안내 예정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국민 체감도 및 기관 자율평가 (7점, 정성)

<추진 방식>

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전략·과제 및 기관의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한 다양한 사례를 기관 차원에서 공모
2. 기관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가단 구성, 내부 구성원 투표 등을 통해 기관을 대표하는 정부혁신 사례 1건을 선정
3. 대상 사례에 대해 국민평가 및 기관 자율평가 실시

- 기관이 제시한 대표 사례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등을 국민평가단이 평가
- 과제를 발굴하여 실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관 스스로 추진하고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
 - * 구체적 자율평가 방식은 추후 공지

나. 자율 혁신 사례 (3점, 정성)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과제 이외에 기관 실정에 맞는 자율형·맞춤형 혁신 사례(대국민 프로세스 개선, 예산 절감 등)를 평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0%	75%	50%	25%

평가근거/
자료

- 별도 서식(추후 공지)

참 고 자 료

1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3-가-1) 및 성평등 기여도(8-나)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3-가-1)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여성고위공무원단 목표달성률		정량	100%
	○ 4급 이상 여성 본부과장급 목표달성률		정량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목표달성률		정량	
	○ 중앙행정기관 주요 보직의 여성 임용비율		정량	
(8-나) 성평등 기여도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책	○ 폭력 예방 교육 - 기관장 참석 여부 - 고위직 및 직원 예방교육 참여율 · 고위직 : 부기관장 ~ 부서장 -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 실시 여부 ○ 방지 조치 - 고충처리 외부전문가 ombudsman 위촉 또는 배치 여부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여부 - 고충처리기구(상담창구, 고충심의위원회 등) 및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유무 -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및 성희롱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내부 게시판 게시, 홍보물 제작·비치, 이메일, 공문 발송 등) 여부	정량	60%
	성주류화 정책 노력도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개선 실적 ○ 특정성별영향평가 수용률	정량	40%
	계			100%

□ 평가 방식

○ (3-가-1) 분야별 기관의 목표달성률 산술평균값을 활용

※ 산식 : {(여성고위공무원단 목표달성률 + 4급 이상 여성 본부과장급 목표달성률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목표달성률) / 3 + 중앙행정기관 주요 보직의 여성 임용비율} × 배점

- (8-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책, 성주류화 정책 노력도는 정량평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책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3-가-1)	양현순 사무관	02-2100-6200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8-나)	장유남 사무관	02-2100-6164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8-나)	강병관 사무관	02-2100-6172

2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3-가-2)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정량	83.33%
	○ 중앙행정기관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량	8.33%
	○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량	8.33%
총 계			100%

□ 평가 방식

-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 2, 제79조에 따라 연 2회 E-신고 시스템에 전산 제출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6월·12월 기준)을 바탕으로 정량평가
- 측정 산식 : 기관 점수 = 'P(A) + P(B) + P(C)' 값을 환산(최대 100)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A) = {(6월 장애인수 / 6월 고용의무인원) + (12월 장애인수 / 12월 고용의무인원)} ÷ 2

A	P(A)	A	P(A)
$1.1 \leq A$	100	$0.8 \leq A < 0.9$	40
$1.0 \leq A < 1.1$	80	$0.7 \leq A < 0.8$	20
$0.9 \leq A < 1.0$	60	$A < 0.7$	0

※ 계산시 소숫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중앙행정기관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B)

B	P(B)
6월, 12월 모두 이행	10
6월, 12월 중 1회만 이행	5
6월, 12월 모두 미이행	0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경우(상시근로자 50인 미만)	0

-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C) =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6월, 12월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수) ÷ (산하 기타공공기관 수)

C	P(C)	C	P(C)
$C = 1.0$	10	$C < 0.2$	0
$0.6 \leq C < 1.0$	6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0
$0.2 \leq C < 0.6$	3		

※ 계산시 소숫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참고 사항

- 고용의무인원 : 해당 월의 정원(공무원의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수(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년도 법정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인원(공무원이 아닌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상시근로자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중증장애인 예외)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법정 의무고용률: 3.2%('17~'18년)

- 장애인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산입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도 포함하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2명 고용한 것으로 산입

(예시) 중증(60시간이상) 3명, 중증(60시간미만) 1명, 경증 10명

$$= (3\text{명} \times 2) + 1\text{명} + 10\text{명} = 17\text{명}$$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사무관	044-202-7498
	윤희정 주무관	044-202-7486

3

인권개선(3-나)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에 대한 권고 포함

※ 검찰청 관련 사항은 법무부, 국직기관·합참·각 군 본부·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관련 사항은 국방부에 포함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권고이행	○ 권고이행계획 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 회신 의무기간 초과 시 1개월 당 감점	정량	50%
	○ 권고이행의 충실도	정성	
	○ 권고이행의 난이도	정성	
인권개선 노력	○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지표 비중 100%	정성	50%
총 계			100%

□ 평가 방식

○ (권고이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회신 의무 기간(90일) 준수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및 권고의 전부·일부·불수용 등 충실도, 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한 정성평가

※ 평정 대상은 권고 내 개별 주문(主文) 내용의 이행

※ '17년 하반기 권고에 대한 평가도 포함

○ (인권개선 노력) 피권고기관 및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들의 전반적인 인권보호나 증진의 노력을 유형화하여 정성평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박병수 사무관	02-2125-9821

4 물품 구매(3-다)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노력 및 성과 - 법정 의무 구매율(1%) 달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	정량	50%
중소기업 제품 구매	-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노력 및 성과 - 법정 의무 구매율(50%) 달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	정량	40%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노력 및 성과 - 법정 의무 구매율(10%) 달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	정량	10%
총 계			100%

□ 평가 방식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시스템(d-Brain, SMPP 등) 활용하여 정량평가
- 측정 산식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text{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 (\text{총 구매액})\} \times 100$

구매율	P(A)	A	P(A)
2.5% 이상	+1.50점	0.8% 이상 ~ 1.0% 미만	-0.25점
2.2% 이상 ~ 2.5% 미만	+1.25점	0.6% 이상 ~ 0.8% 미만	-0.50점
1.9% 이상 ~ 2.2% 미만	+1.00점	0.4% 이상 ~ 0.6% 미만	-0.75점
1.6% 이상 ~ 1.9% 미만	+0.75점	0.2% 이상 ~ 0.4% 미만	-1.00점
1.3% 이상 ~ 1.6% 미만	+0.50점	0.1% 이상 ~ 0.2% 미만	-1.25점
1.0% 이상 ~ 1.3% 미만	+0.25점	0.1% 미만	-1.50점

※ 총 구매액 : 기관에서 구매한 전체 물품 및 용역 서비스의 합계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구매액을 별도 설정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정구매율(1%) 이상인 경우에도 0.2점만 부여

- 중소기업 제품 구매 : $\{(\text{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text{총 구매액})\} \times 100$

구매율	P(A)	A	P(A)
90% 이상	+1.2점	40% 이상 ~ 50% 미만	-0.2점
85% 이상 ~ 90% 미만	+1.0점	30% 이상 ~ 40% 미만	-0.4점
80% 이상 ~ 85% 미만	+0.8점	20% 이상 ~ 30% 미만	-0.6점
70% 이상 ~ 80% 미만	+0.6점	15% 이상 ~ 20% 미만	-0.8점
60% 이상 ~ 70% 미만	+0.4점	10% 이상 ~ 15% 미만	-1.0점
50% 이상 ~ 60% 미만	+0.2점	10% 미만	-1.2점

※ 총 구매액 : 물품, 공사, 용역의 총 구매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구매목표비율 설정한 기관은 **동** 목표비율 달성 시 법정구매율(50%)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 0.2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 $\{(\text{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text{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times 100$

구매율	P(A)	A	P(A)
25% 이상	+0.300점	7.0% 이상 ~ 10% 미만	-0.075점
20% 이상 ~ 25% 미만	+0.225점	4.0% 이상 ~ 7.0% 미만	-0.150점
15% 이상 ~ 20% 미만	+0.150점	2.0% 이상 ~ 4.0% 미만	-0.225점
10% 이상 ~ 15% 미만	+0.075점	2.0% 미만	-0.300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구매목표비율 설정한 기관은 **동** 목표비율 달성 시 법정구매율(10%)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 0.15점 부여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김주홍 주무관	044-202-3322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 제품 구매)	김명제 사무관	042-481-4468

5 국민참여 제도 활용도(5-나)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국민 디자인단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창출 실적 ○ 국민디자인단 정착기반 조성 실적	정량/ 정성	25%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실적 -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활용 참여 또는 자체 행사 개최	정량/ 정성	25%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 기관이 국민제안 심사 후 채택 안건에 대해 정책반영 (실시)한 정도	정량	25%
국민생각함 활용도	○ 기관안건 등재건수(50%) - 기관이 자체적으로 국민생각함에 등재·운영한 실적	정량	25%
	○ 기관안건 호응도(50%) - 기관 등재 안건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댓글, 설문 참여)	정량	
총 계			100%

□ 평가 방식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11월)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 우수과제, 우수과제 후보 등에 따라 평가 점수 부여

- 우수과제 공모 시 정착기반 조성 실적 평가 안내 예정

- 우수과제 창출실적(A점) = 우수과제 선정(A점), 우수과제 후보(A점×75%), 목표 달성 과제(A점×50%), 추진목표 미달성(A점×25%), 미제출(0점)
- 정착기반 조성실적(B점) = abc 사항 중 3개 만족(B점), abc 사항 중 2개 만족(B점×75%), abc 사항 중 1개 만족(B점×50%), abc 사항 중 0개 만족(B점×25%)
 - a.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운영을 위한 교육, 워크숍, 컨설팅,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적극적 실시 여부
 - b. 국민디자인단 추진방식을 기관 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여부
 - c. 국민디자인단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여부

○ (국민참여 정책토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실적, 광화문 1번가 활용도 또는 열린정책 소통공간 구축 및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

-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70%)
 - 총 참석인원 10명 이상, 참석자의 50% 이상이 일반 국민,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수 제외)
 - 점수 기준 : 5회 이상 개최 시 70%, 3회 50%, 1회 30%, 미개최 0%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공간을 활용하여 열린소통포럼 참여(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 또는 자체 행사 개최(30%)
 - 자체 행사 개최 시 : 3회 이상 30%, 2회 20%, 1회 10%, 0회 0%
 - 참여 시 : 3회 이상 30%, 2회 20%, 1회 10%, 0회 0%
 - ※ 단, 두 지표의 합산 총점은 30%를 넘지 못함
 - ※ 자체 행사는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행사’ 개최 횟수와 중복 카운트 가능
예시) 열린소통포럼 공간 행사 2회, 부처 자체공간 행사 1회 개최 경우
→ 7점(공통점수 5점(3회), 중앙부처 점수 2점(2회) 인정)

○ (국민제안 정책 반영도) 국민신문고 DB에서 실적 집계·평정

- (제안 실시건수 점수) × 80% + (제안 실시율 점수) × 20%
 - 제안 실시건수 점수 = (기관 실시건수 / 기관 유형별 평균 실시건수) × 50
 - ※ 실시건 = 점검기간 실시 + 점검기간 이전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일부 실시 또는 완전 실시만 해당, 실시 예정 및 실시 불가 제외)
 - 제안 실시율 점수 = {(점검기간 내 채택하고 실시한 건 + 점검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 / (점검기간 내 채택 건 + 점검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점검기간 중 실시한 건)} × 100
 - ※ 민원이관 및 비제안종료건 제외

○ (국민생각함 활용도) 국민생각함 DB에서 실적 집계·평정

- 기관안전 등재건수 = {신규등록 점수(a) + ②생각완성 점수(b)} × ③소관법령수 가중치(c)
 - a. 안전 신규등록(탄생) 점수 : 생각함에 등재한 안전수(기준안의 ‘발전’ 미포함)
 - ※ '18년 평가기간 내 실적 집계 후 구간 재산정

<'17년 실적 기준 구간표>

1~5건	6~10건	11~15건	16~20건	21~25건	26~30건	31~35건	36~40건	41~45건	46~50건	51건~
30점	32점	34점	36점	38점	40점	42점	44점	46점	48점	50점

b. 생각완성 점수

- ※ '18년 평가기간 내 실적 집계 후 구간 재산정

<'17년 실적 기준 구간표>

1~5건	6~10건	11~15건	16~20건	21~25건	26~30건	31~35건	36~40건	41~45건	46~50건	51건~
30점	32점	34점	36점	38점	40점	42점	44점	46점	48점	50점

c. 소관법령(법률, 시행령)수 가중치

<소관법령수 대비 가중치>

(’18.1. 현재 기준)

20건 미만	20건이상 40건미만	40건이상 60건미만	60건이상 80건미만	80건이상 100건미만	100건이상 120건미만	120건이상 140건미만	140건이상 160건미만	160건이상 180건미만	180건이상 200건미만	200건 이상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 기관안전 호응도 = {(개별기관 안전당 참여자 수) / (기관 유형별 평균 안전 참여자 수)} × 50
 - 개별기관 안전당 참여자 수 = (총 참여자 수) / (총 등록 안전수)
 - ※ 참여자 수 집계기준: 댓글, 설문 등 참여자수(평가기간 만료일 24:00기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국민디자인단,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김영근 사무관	02-2100-346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김종혁 사무관	044-200-7267

6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6-가)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공공자원 개방·공유	○ 공공자원 개방 현황 등록 - 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국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유희시간에 국민에게 개방·공유하였는지 여부	정량	감점

□ 평가 방식

○ 등록대상 :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연수원(숙박시설), 기타 기관별로 공유를 희망하는 자원 등

※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외

○ ‘정부24’ 내 ‘자원공유(신설)’ 코너에 등록된 자원 내용으로 판단

※ 연중 상시 등록 가능, 12월 15일 기준으로 등록 여부 판단

○ 기관별 특성과 시범사업 기간(‘18.6.~’19.9.)임을 감안하여, 등록 대상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사무관	02-2100-4065
	박경주 사무관	02-2100-4072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6-나)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인프라	○ 담당인력 지정 실적(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자 등)	평가 조사서 활용	미정
	○ 교육훈련 지원 실적		
	○ 교육훈련 참여 실적		
	○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집행		
	○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및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개방	○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개방 유무		미정
	○ 개방데이터 수요 발굴 노력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율		
	○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활용	○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미정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 수요자 신고신청 적기처리율		
	○ 공공데이터의 홍보 실적		
품질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미정	
	기타		○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우수사례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수행 또는 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권고 및 조치 수행			
총 계			100%

□ 평가 방식

- 공공데이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기관이 자체평가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여(10월말) 공공데이터평가단이 평가(11월 중)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00-3451

8 정보공개(6-다)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사전정보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정량/ 정성	100%
	○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원문공개	○ 원문공개율	정량	미반영
청구처리	○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정량	미반영
	○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관리	○ 고객 수요분석 실적	정량	미반영
	○ 고객 만족도		

□ 평가 방식

-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한 사전정보공표 건수(조사일 기준)를 조사단이 추출하여 조사
 - ※ 목표건수 : 36 / 표준모델 적용 정보와 자체발굴 정보 모두 인정
 - ※ 목표건수 대비 100%이상 10점, 95%이상 9점, 90%이상 8점, 85%이상 7점, 80%이상 6점, 75%이상 5점 70%이상 4점, 65%이상 3점, 60%이상 2점, 55%이상 1점, 55%미만 0점
-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조사단이 기관 홈페이지에서 10건의 사전정보 공표 정보를 무작위로 검색하여 정보의 충실성 조사(조사일 기준)

▪ 판단 기준

구 분	내 용
게시판 설정여부(20%)	웹페이지 형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표목록마다 각각 게시판 (목록별 URL) 설정 여부 ※ 웹 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사례 지양
주기적 현행화(30%)	목록별 주기적 내용 현행화 여부
접근 및 검색 용이성(20%)	사전정보공표 용어 일원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전정보공표, 메뉴 배치, 검색기능 제공, 즐겨찾기 정보 제공, 자료관리 체계성
정보내용의 충실성(30%)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 사무관	02-2100-3451

9 협업·조정·갈등관리(7-가, 나)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협업 및 조정	- 부처 내 역량강화 / 칸막이 제거 노력 - 차관(급) 주재 정책점검회의 운영 성과 - 실·국간 횡적 정책현안 TF 운영 성과 - 부처 내 공직자 개인역량·판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실적	정량/정성	10%
	- 부처 간 협업·조정 노력 - 협업조정과제 점검·관리 노력 ※ 명백한 정책혼선 사례에 대해서는 감점처리 - 유관부처와의 정책협의 추진 실적	정량/정성	15%
	- 협업 우수사례 및 협업문화 조성 - 도시재생 등 주요 국가시책의 부서 간·기관 간 협업 또는 민관 협업을 주관하거나 조력한 사례 실적 - 기관 간 소통·협업을 위한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	정량/정성	25%
갈등관리	- 갈등관리 제도운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활용정도 - 갈등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성과급 및 인사반영 등)	정량/정성	5%
	- 갈등과제 관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관계장차관회의 등 국정협의체 활용 노력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현장 방문 등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노력	정량/정성	20%
	- 갈등관리 성과 - 갈등과제별 실질적인 해소·완화 정도	정량/정성	25%
총 계			100%

□ 평가 방식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평가단 운영

※ 서면점검 및 평가 → 부처별 실적 설명회, 대면 심층평가(필요시 현장점검)

○ 협업 및 조정

■ 부처 내 역량강화/칸막이 제거 노력(10점)

① 차관(급) 주재 정책점검회의 운영 성과(5점)

- 정무적·홍보적 관점에서의 정책 필터링 및 중요 발표 예정정책의 내부조율, 정무적 판단, 사전적 홍보 점검 등을 통해 정책품질을 높인 정도
- 세부 착안사항 :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한 정책점검회의 운영 횟수 및 정책 품질 제고 정도

② 실·국간 횡적 정책현안 TF 운영 성과(3점)

- 부처 내 상호 점검을 통해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완결성을 제고한 정도
- 세부 착안사항 : 횡적 정책현안 TF 운영 횟수 및 정책완결성 제고 사례

③ 부처 내 공직자 개인역량·판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실적(2점)

- Best/Worst Practice 발굴·전파 실적, 브라운백 미팅·정책토론회 등 학습기회 제공 실적

■ 부처 간 협업·조정 노력(15점)

① 협업·조정 과제 점검·관리 노력(10점)

-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집중관리하여 정책혼선을 예방하고 정책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의 노력을 평가
- ※ 명백한 정책혼선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최대 -5점)

② 유관부처와의 정책협의 추진 실적(5점)

-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협업 추진
- 세부 착안 사항 : MOU 체결 또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워크숍 개최 실적 등

■ 협업 우수사례 및 협업문화 조성(25점)

① 협업 우수사례(25점)

- 부서 간·기관 간 협업 또는 민관 협업을 주관하거나 조력한 기관 대표사례 1건
- 혁신성(독창적·혁신적인 방식), 노력도(준비·자원 투입·도전성), 효과성(행정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협업문화 조성 기여), 확산가능성 평가

② 협업문화 조성(가점 5점)

- 기관 간 소통·협업을 위한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 평가

구분	내용
일반행정망 이용기관	①~④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실적 합산 평가(단, ①실적은 필수) * 산식 : ①(필수) + ② + ③ + ④ ①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등록) 건수 ②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문서 공동결재 건수 ③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기관 간 메모보고 건수 ④ G드라이브의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공유) 건수
폐쇄망 이용기관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경찰청)	온-나라 이음시스템의 PC영상회의 활용실적 증가율(최근 3년 평균 활용실적 대비)을 정량평가 * PC영상회의 개최건수: 2인 이상 참여하여 20분 이상 개최한 PC 영상회의 개최건수 * 산식 : (PC영상회의 개최건수 - 최근 3년간 PC영상회의 개최건수 평균) / 최근 3년간 PC영상회의 개최건수 평균 * 100

○ 갈등관리

■ 갈등관리 제도운영(5점)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2점)

- 갈등현안 대응,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갈등관리 역량강화 추진 노력 / 심의회 운영 횟수

② 갈등영향분석서 작성·활용정도(2점)

- 갈등현안에 대한 선제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관련 노력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부처에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적(자체작성+외부위탁)
- 갈등영향분석서 활용정도 : 작성한 갈등영향분석서를 갈등사례와 갈등현장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용하거나 활용한 사례 또는 실적

③ 갈등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1점)

- 교육훈련, 성과급 및 인사반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구축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처 노력
- 교육훈련 : 갈등관리 집합교육,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참가, 고위공무원단 직무교육, 갈등관리 해외사례연구 및 해외연수 등을 통한 갈등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 노력
- 성과급 및 인사반영 : 성과급 측정기준·인사 관련 규정 혹은 지침 등에 갈등관리 실적·역량의 반영 유무, 갈등관리 실적·역량을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거나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받은 실제 사례

■ 갈등과제 관리(20점)

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관계장차관회의 등 국정협의체 활용 노력(10점)

- 갈등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책·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정협의체 활용 정도
- 국정협의체에 상정된 갈등과제 관련 안건 수, 상정된 안건의 충실성·적절성, 안건 상정을 위한 노력, 국정 협의체 논의로 마련된 범정부 대책의 효과성, 부처 이견조정 여부 등

②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현장 방문 등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노력(10점)

- 갈등조정협의회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위한 노력 정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횟수 및 안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갈등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대화 : 고위급의 현장방문·이해관계자 대화 빈도,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 등

■ 갈등관리 성과(25점)

① 갈등과제별 실질적인 해소·완화 정도(25점)

- 모니터링 및 과제발굴을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갈등과제 및 갈등현안에 대한 제도 운영·과제관리 노력 등을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완화한 실적
- 예방성과(국화·언론·지역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전인지 및 효과적인 갈등예방 활동 실적), 과제발굴(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발굴 실적), 해소·완화정도(갈등관리 제도운영 등을 통한 조정안 마련·협약체결 등 갈등상황의 실질적 해소 및 이해관계자간 대립 완화 정도)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무조정실 정책조정과(협업·조정)	윤명원 사무관	044-200-2091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협업 우수사례)	서영지 사무관	02-2100-3438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갈등관리)	김신영 사무관	044-200-2063

10 부처별 청렴도(8-가-2)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측정항목(안)

측정영역	측정항목	방식	비중
외부청렴도	○ 부패위험지수(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 부패지수(부패 경험 및 부패 인식 정도)	조사	60%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 업무청렴지수(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25%
정책고객 평가	○ 부패인식 ○ 부패통제 ○ 부패경험		15%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훈계 등 처분에 대한 감점		(7%)
총 계			100%

※ '18년 측정항목 및 가중치 비중은 '18년 모형 검토 후 일부 변경 가능

※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반영 검토 중

□ 평가 방식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
- 측정영역별 진행 방식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 위주로 진행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 추출하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진행
 - (정책고객)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한 후 표본 추출하여 전화 조사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044-200-7632

11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실적(8-다)

□ 평가대상 : 36개 중앙행정기관

○ 관리대상 :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 제외)

※ 공운법 또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소관 기관 36개는 아래 기준에 따라 미이행률·채용관련 점검률 미충족 시 감점, 미해당 기관 7개는 0점 부여

- 공운법, 기타공직유관단체 동시 해당(25)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 공운법만 해당(9) : 외교부, 환경부, 공정위, 인사처, 관세청, 방사청, 농진청, 기상청, 원안위

- 기타 공직유관단체만 해당(2) : 법제처, 해경청

- 미해당(7) : 권익위,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 평가대상기간 중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신설·폐지 등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변경 가능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채용제도 개선·관리 노력	○ 관리대상 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규정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3가지 핵심 규정 도입 여부 - 채용비리 연루 시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 부정합격자 퇴출 - 피해자 구제 규정	정량	50%
채용비리 적발 노력	○ 주무부처의 관리 대상 기관의 '18년 채용비리 적발 노력 ※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의뢰된 사건은 감점 부여 (단, 점검결과 채용비리 적발건(수사의뢰, 중징계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 적발에 따른 감점 상쇄 가능)	정량	50%
총 계			100%

□ 평가 방식

○ (채용제도 개선·관리 노력) 미이행률에 따라 감점 부여(최대 - 0.5점)

※ 미이행률 = {(미이행 기관 수) / (관리대상 기관 수)} × 100

- 10% 이하 0점, 10~30% -0.15점, 30~50% -0.25점, 50~80% -0.4점, 80~100% -0.5점

※ 미이행 기관 : 3가지 핵심 규정을 하나라도 마련하지 않은 기관

※ 소관 부처가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현지점검, 행정지도, 교육 등을 실시

하고 증빙(단순 공문안내 제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분자 산정에서 제외

○ (채용비리 적발 노력) 채용관련 점검률에 따라 감점 부여(최대 -0.5점)

※ 점검률 = {(점검 기관 수)/(관리대상 기관 수)} × 100

- 100% 0점, 100~70% -0.15점, 70~50% -0.25점, 50~20% -0.4점, 20~0% -0.5점

※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의뢰된 사건에 따라 감점 부여 : 건당 -0.15점(최대 -0.5점)

- 다만, 점검결과 채용비리 적발건(수사의뢰, 중징계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 적발에 따른 감점을 상쇄 가능 : 수사의뢰 건당 0.1점, 중징계요구 건당 0.05점(최대 0.5점)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임재정 서기관	044-215-557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이범석 사무관	044-200-7617

12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9-가-1)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식	비중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 등록 서비스 명칭, 자격 요건, 지원 내역 등 변경 사항을 월 1회(매월 말일) 정비(현행화)	정량	100%
기타	○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중이나 목록 등록 누락한 경우 ○ 담당자 교육(상·하반기 각 1회) 불참한 경우	정량	감점

□ 평가 방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월 1회 이상 공공서비스 목록 정비, 단, 정비 대상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목록 조회 화면에서 일괄 현행화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병행 추진
-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12개월 평균 현행화율로 평가(매월 말 기준, 공공서비스 목록 등록시스템(알려드림e) 자동 산출)
 - ※ 현행화율 = {(현행화한 목록 수) / (전체 등록 목록 수)} × 100
 - 100% 이상 100%(배점), 95% 이상 75%, 90% 이상 50%, 85% 이상 25%, 85% 미만 0%
- (기타) 행안부 자체 점검 및 민원인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누락 목록을 합산하여 현행화 실적에서 감점
 - ※ 해당 건당 -0.25점 감점(배점의 5%)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이선희 사무관	02-2100-4219